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8573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3. 10. 4.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10. 17.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3. 10. 4.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23. 8.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6만 원, 존속기간은 2023. 10. 4.부터 202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0. 4.까지 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23. 10. 13. 보증금 잔액에 250만 원을 추가한 돈을 2023. 10. 1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바로(1달 이내에) 이사 나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정 차임 역시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별지